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事實証明の発行・閲覽申請書

-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 証明書の発行を本人が直接申請する場合、政府24 (www.gov.kr) で無料で発行することができます。訪問申請時には、身分証明書のみ提出し、申請書の作成は不要です。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 後頁の注意事項を参考にして記入して下さい。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発行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	------------	------------	--------------	----------

발급대상자 (위임받은 사람) 発行対象者 (委任した人)	성명 氏名	연락처 連絡先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	

증명종류 証明書の種類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出入国に関する事實証明 ( )通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input type="checkbox"/> 外国人登録事實証明 ( )通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 )건 外国人登録閲覽 ( )件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出入国に関する事實証明の英字氏名併記の申請(国民のみ)	<input type="checkbox"/> 포함 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伏せる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外国人登録事實証明の場合、過去の登録番号(住民登録・ 外国人登録・国内居所申告番号)と在留地の記載申請	과거 등록번호 過去の登録番号 <input type="checkbox"/> 포함 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伏せる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過去在留地の変更事項 <input type="checkbox"/> 포함 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伏せる
---	--

출입국 조회기간 出入国照会期間	. . . 부터から . . . 까지 まで
------------------	------------------------

용도 用途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申請人 (委任を受けた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または国内居所 申告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発行対象者との関係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出入国管理法」 第88条及び同法施行規則第75条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事實証明の発行・閲覽を申請します。

년 年 月 月 日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出入国·外国人庁(事務所·出張所)長、市長・郡守・区庁長・町長・面長・銅張、在外公館長 殿

### 위임장 委任状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上記発行対象者(委任者)は、上記の事實証明の発行・閲覽申請及び受領に関する事項を、上記申請人  
(委任を受けた者)に委任します。

년 年 月 月 日 日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発行・閲覽対象者(委任した者)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捺印)

유의사항 注意事項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1. 灰色の塗りつぶされた欄は、申請者作成不要です。[ ]には該当するところに「チェック印 (✓)」を入れてください。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2. 法人申請社の場合、前頁の申請人氏名欄には法人名及び代表者の氏名、住民登録番号欄には法人登録番号、電話番号欄には連絡可能な担当者と電話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3. 事実証明の発給申請と外国人登録閲覧申請は、本人またはその法定代理人、或いはそれから委任を受けた者に限ります。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以下の場合、「出入国管理法施行規則」第75条第3項及び第4項の規定に基づき、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の発行また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の発行(閲覧)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行方不明、死亡などで本人または法定代理人が意思表示ができない状態であるか、明らかに本人の利益のために使用されるものと認められる場合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本人の配偶者、本人の直系尊属・卑属又は兄弟・姉妹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本人の配偶者の直系尊属・卑属又は兄弟・姉妹(本人の配偶者が死亡した場合)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本人である外国人が完全に出国した場合 : 本人である外国人を雇用した者又はその代理人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 債権・債務関係に関する裁判で勝訴判決が確定した場合、「住民登録法施行令」別表2第3号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金融会社などが延滞債権の回収のために必要とする場合、当該外国人と債権・債務関係にある場合(期限の経過や期限の利益喪失などで弁済期が到来した場合に限るものとし、債務額が100万ウォン以下の場合を除きます) : **外国人登録事実証明の発行または閲覧を希望する債権者**
    -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 債権・債務関係を証明できる契約書、借用書、手形などは、送金領収書、公証、確定日付など公的証拠を担保できる書類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その他法務部長官が公益上必要であると認めた者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委任を受けた場合には、委任状と委任した人の身分証明書(写し)を添付の上、委任者の身分証明書を提示する必要があります。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他人の署名または印鑑の盗用などで虚偽の委任状を作成して証明書を申請または受領した場合には、関連する法律に基づいて罰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 委任は、作成日から6ヶ月まで有効です。